



Zoom-in Trade

- ▶ COVER STORY: 신한인이 선정한 2011 년 이슈 Best 10 1
- ▶ FTA NEWS: 원산지검증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 2
- ▶ VOICES FROM THE FIELDS: 소름끼치도록 무서운 중국 ..3
- ▶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소식 4
- ▶ US CUSTOMS VALUATION RULINGS@..... 5
- ▶ WHERE IS GRACE CHANG?: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내일.....7
- ▶ ABOUT WRITERS 7

신한관세법인 월간 관세 무역 소식지
LEADERSHIP TOWARD INNOVATION & CREATIVITY

신한인이 선정한 2011 년 이슈 Best 10

신한관세법인은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한 해 동안 이슈가 되었던 사건 BEST 10 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한 해간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을 돌이켜 보며 지나간 일들을 되새겨 보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 준비를 잘하여 다가올 기회를 놓쳐서 후회하는 일들이 없도록 해야 하였습니다.



1. INCOTERMS 2010 개정(2011. 1. 1 시행)
정형거래조건에 관한 국제규칙인 INCOTERMS 가 최근 관세자유지역의 확대, 전자통신문의 사용 증가, 운송관습의 변화 등에 따라 최근 10 년간 사용되어 온 INCOTERMS 2000 을 개정하여 INCOTERMS 2010 으로 개정 및 2011 년 1 월 1 일부터 적용 되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도착지 인도조건인 D 조건의 5 개 항목 중 DDP 항목만 그대로 사용되고, 나머지 DAF, DES, DEQ, DDU 4 개 항목이 삭제되었다. 또한 DAT, DAP 2 개의 새로운 조건이 신설되었다.

체계를 개편하였다. 또한 불필요한 소호를 통합하고, 편집상의 오류 등을 수정 하였다.

2. HSK 2012 개정(2012. 1. 1 시행예정)
세계관세기구(WCO)가 제 5 차 HS 협약 개정안을 마련하여 회원국으로 하여금 2012.1.부터 시행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관세, 통계 통합 품목분류표(HSK)에 이를 반영하여 2012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국제기준에 맞게 세계관세기구 (WCO)가 제정한 분류체계를 국내 법규에도 반영한 것으로, 6 단위 품목 수는 기존 5052 개에서 5205 개로 늘어나고, 국제연합식량 농업기구 (FAO)의 요청에 따라 농수산물 분류 체계를 세분화 및 재 그룹화 하였으며, 신제품 출현, 무역 규모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교역량이 증가한 바이오 디젤 특계 및 유기화합물 분류

3. FTA 의 확대
2011 년 7 월에는 한-유럽연합(EU) FTA 가 8 월에는 한-페루 FTA 가 발효되었으며, 11 월에는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빠르면 내년 2-3 월쯤 발효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세계 1 · 2 위 경제권역인 EU · 미국과 FTA 를 맺은 국가가 되었으며, 전세계 규모의 60%(GDP 기준)와 관세 없이 교역하는 경제영토를 지니게 되었다. FTA 경제권역 내에서 자동차, 부품, 프리미엄 가전 섬유 등 주력상품의 수출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의약품, 화학품, 브랜드 의류, 귀금속, 일부 의류기기 등 분야는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국 · 일본과의 FTA 논의도 본격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협상진행중인 국가는 12 개국으로 캐나다, 멕시코, 걸프협력회의 (GCC),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로 내년 또한 FTA 확대는 ISSUE 가 될 듯 하다.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수출기업에는 관세장벽이 철폐되고, 對 러시아 수입측면에서 수출세가 폐지되거나, 낮아지게 되어 국내기업들의 對 러 교역 및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주요수입품목은 원유와 고철 등 자원으로, 우리나라 산업 및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4. 러시아 WTO 가입
12 월 15 일 러시아의 WTO 가입이 확정되었다. 러시아는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이 1 조 4650 억달러 약 1700 조원) 로 세계 11 위이며, 한국의 제 11 위 수출 시장으로 러시아 수출 시 최대 약 3 억 5 천만달러까지 관세 절감 효과를 거둘

5. 2011 년 수출입 동향 및 무역규모 1 조원 달성
2011 년 우리나라 수출은 전년 대비 19.4% 증가한 5,570 억 달러, 수입은 23.2% 증가한 5,240 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무역수지는 330 억 달러 흑자가 추정된다. 중동 MENA(중동 및 북아프리카) 사태, 일본 대지진,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 악재에도 불구하고 우리 무역은 세계 9 번째로 무역 1 조 달러를 달성하였으며, 작년에 이어 세계 수출순위 7 강, 무역규모 9 위 유지가 예상된다. 그러나 2012 년에는 선진국 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수요 부진과 선박, 석유제품, 반도체 등 주력 수출품목의 부진 및 증가율 둔화에 따라 한 자릿수(6,005 억 달러, 7.8%)의 수출이 예상되고 있다.



6. AEO 상호인정협정(MRA)의 추진

AEO 상호인정협정(MRA)은 자국의 AEO 공인업체와 협정 상대국의 공인업체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협정으로, 우리나라는 2010년 6월에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와 MRA를 체결하였으며, 2011년에 일본(5월), 뉴질랜드(6월)와 MRA를 체결하였다. MRA의 체결로써 AEO 인증기업들은 협정상대국 세관으로부터 수출입 화물검사 생략, 납부세금 심사면제 등 각종 AEO 통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통관시간도 대폭 단축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현재 중국과의 MRA를 추진 중에 있으며 제 1 교역국인 중국과 협정 체결 시 對中 수출업체 및 현지 진출업체의 통관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7. 주요법률 개정사항 등

- ① 최빈개발도상국 특혜관세 적용대상 확대 예정 - HSK의 개정·시행에 맞추어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이 적용되는 품목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수정하는 한편, 그 적용품목을 관세부과대상품목의 95% 수준까지 확대예정
- ② 화물운송주선업 등록제로 변경 - 2011년 7월 1일부터 보세화물운송주선업을 현행 신고 제에서 등록제로 변경. 이는 신고제 적용하는 경우 적하목록 허위작성 등 관세법규 위반 시에 행정제재가 불가능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 ③ 할당관세 연내 적용 및 할당관세 시행 연장 등 - 정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구제역, 농산물 작황 부진 등에 따른 수급 애로를 해소하고자 올해

7 차례의 조정을 통해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116 개까지 늘렸음.(12월 현재 112개) 정부는 내년에도 제분용 밀 등 103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며, 국내산업 위축 방지를 위해 15개 품목에 대해 조정관세도 운용할 예정이다.

8. 간이정액 환급대상 및 용도세를 적용대상 확대

2011년 6월 간이정액환급 대상에 16개 품목이 추가되었다.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이 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신속 간편하게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수출신고필증 제출만으로 일정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간이정액 환급 대상품목은 3,989개로 늘어났으며 관계산업의 중소기업 지원 또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관세청은 지난 7월, 2011년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대상 품목 변화에 따라 용도세를 적용 및 사후관리대상 물품의 조정내용을 반영한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발표한 바 있다.

9. 천재지변으로 인한 세계무역에 미친 영향

(일본 지진피해로 인한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등)
올해 가장 큰 재해는 3.11 동일본의 대지진이었다. 이 재해는 1만 9천여명이라는 인명피해와 함께 일본 경제에도 타격을 입혀, 생산활동의 중단, 교통물류, 전력 사정 악화로 소비 생활에도 지장을 받고, 주식시장도 급락세를 이어가는 등 일본경제를 위축시킨 바 있다. 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일본 원전 피해가 발생하여, 일본 우유 및 시금치 등 야채에서 방사능이 기준보다 높게 검출되는 등 2차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일본은 방사능 오염 기준치 초과하는 식품을 출하 및 섭취를 제한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이탈리아, 호주 등 주요 외국 또한, 일본에서 생산되는 원유와 우유, 과일, 채소 등의 수입금지조치를 취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식품에 대하여 매건

정밀검사를 실시, 일본이 출하정지한 품목은 잠정 수입중단 조치를 실시하고, 농식품부와 식약청에서는 「방사능 안전관리 신속대응팀」을 운영하여 정부 내 일본 식품관련 상황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검사조치 강화, 일본산 식품 기피 등 영향으로 일본산 수입식품은 7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향후에도 이러한 현상은 일정 기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10.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경제위축 및 환율변동

유럽의 재정위기는 2010년 4월 그리스를 시작으로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 일부 나라들이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경제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단일통화체제를 도입함에 따라 가속화 되었다. EU 및 유로 주요국들은 유로존의 재정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정상회담을 7월과 10월에 개최하였으나, 국가별 정치적 입장차이로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들은 EFSF 가용자금으로 PIISG 국가들의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IMF의 SPIV를 통한 유럽 재정위기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세부사항을 진행할 예정에 있다.

한국의 남유럽 국가들에 대한 수출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지만, 해당 지역 및 대(對)유로지역 수출 둔화는 불가피하다. 유럽 재정위기가 진정되기까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원/달러 환율 상승, 엔/달러 환율 하락, 원자재가격 하락 등이 예상된다. 한국의 수출은 환율보다 세계경제의 수요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EU 및 글로벌 경기의 회복세가 둔화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EU는 중국에 이어 한국의 제2위 수출시장이나, 일부 국가의 경우 초긴축정책 시행으로 수입수요 회복을 크게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신한관세법인

원산지검증 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

② 부가가치기준

한-미 FTA 발효가 된다면 우리나라는 8개의 FTA 협정, 총 45개 국가와의 FTA가 발효되는 것이며,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한국산 제품의 관세혜택의 범위가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수출입업체는 FTA 관세혜택의 범위가 늘어나는 만큼 FTA 상대국의 원산지 사후검증을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한-EU FTA에 이어 한-미 FTA 발효도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검증대비를 위한 것 중 두번째로 부가가치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원산지검증은 협정 및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요건(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류 등) 이외에 모든 특혜 요건(거래당사자, 세율, 운송경로, 신청절차 등) 또는 허위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정절차이다. 부가가치기준에 의하여 원산지를 판정한 당사자는 하기 Check List 를 참조하여 향후 원산지검증 요청시 주요 체크사항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다.

1. 공통사항 Check List

(1) 거래당사자 요건

- 해당 제품 수출입자의 계약국 소재여부 및 원산지검증 수행시 피검증자로서 자료제출 의무자인지 여부
- 제품 생산자 및 재료 생산자가 원산지와 관련된 모든 자료의 보관 의무자인지 여부

(2) 양허품목 및 세율심사

- 특혜세율 적용받기 위한 물품의 품목분류 조작 여부

(3) 운송요건

- 물품이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직접운송 되었는지 여부
- 제 3 국을 경유한 경우 추가가공 및 세관통제 여부 확인

(4) 원산지증명 요건

-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기관발급 또는 자율발급) 등 형식요건 준수 여부
- 원산지증명서의 물품과 수입국 세관에 수입통관된 물품과 동일성 여부

2. 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 Check List

(1) 생산공정 및 생산시설 확인자료(사진, 공장등록증 등)를 통한 각 협정별 불인정공정 이상의 공정 수행여부 확인

- 제품의 실제 생산공장의 위치, 주소, 공장 배치도, 생산라인, 생산인력현황, 출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협정에서 정한 불인정공정을 확인 후, 해당 공정별 투입원재료 확인
- 서류로 확인이 곤란하거나 의심이 가는 경우 현지검증 실시

(2) 제품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가격과 원산지의 정확여부

[주요 위반유형]

유형	위반내용
원산지재료비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원산지재료를 원산지재료로 둔갑 √ BOM 조작: 재료·부품누락, 소요량 조작, 소요량당 가격조작 √ 해당업체에서 사용하는 재료·부품(대체가능재) 재고관리기법과 다른 기준을 사용
비원산지재료비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산 원재료의 가격(CIF 가격)에 관세 등 국내에서 발생하는 수입부대 비용을 포함
제조간접비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의 기간배분을 조작
물품가격 과다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정에서 정한 상품가격 미적용 [예: CIF 가격적용(FOB 가격기준)] √ 수출신고시점 이외의 환율 적용 √ 물품원가에서 환급액 미공제 √ 판매 및 일반관리비·이윤의 과다 책정

※ 관세청 보도자료 참조

- 재료별 소요량을 확인하여 비원산지재료의 누락 여부 확인
- 재료 종류에 따른 협정별 계상기준 적용 적정성 확인
- 수입재료 / 국내조달재료 / 무료(할인)조달재료 / 자가생산재료
- 원산지재료 가산요소/비원산지재료 공제요소
- 재료별 원산지 확인
- 재료별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일반기준+ 품목별기준) 확인
- 원산지 확인대상 재료 선정 및 거래계약서, 송장 등에 의한 재료별 공급자 및 생산자 확인
- 국산 원재료는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수령여부 확인
- (3) 물품 가격 및 원산지 정확여부 확인**
-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일반기준+품목별기준) 확인
- 물품가격에 대한 협정별 부가가치기준 산출공식 적용의 적정성 및 상품가격(분자값) 계상의 적정성
- 노무비, 제조간접비, 판매비, 관리비, 이윤 계상의 적정성

3. 부가가치기준 충족현황 및 원가산출내역서 등 입증서류 제출

공통사항 충족여부 대한 입증서류와 부가가치기준 충족현황 및 원가산출내역서 등 원산지판정을 위한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생산자 및 수출자가 해당 서류를 5 년간 서류 및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지 여부도 검증의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원산지 검증은 수입신고수리 후 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서면조사를 우선 실시한 후 원산지 증빙서류의 진위여부 및 그 정확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4. 원산지검증에 대한 사후조치

원산지검증에 대한 사후조치에는 수입물품의 경우 ①원산지 검증이 진행되는 경우 검증기간 중에 추가 수입신고 되는 동일물품에 대하여 검증이 종결될 때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일시 보류하거나 ②원산지검증 결과 원산지기준에 미달, 상대국의 검증결과 미회신 및 원산지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추징하게 된다. 또한 ③협정관세 적용제한자로 지정될 수 있으며, 수출자 및 수입자는 ④처벌의 내용에 따라 관세질서벌인 과태료와 관세형벌인 벌금 및 징역으로 처벌받게 된다.

한-미 FTA 의 발효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한-미 FTA 는 한-EU FTA 에 이어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수출자 등이 자율적으로 작성할 있는 자율발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협정세율 적용을 위한 접근이 용이해졌지만 실질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당사자는 원산지검증 위험에 쉽게 노출되어 있음에 유의하여야 하며, 정확한 원산지판정 절차 및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원산지 검증대비 주요 보관서류]

주체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보관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증명서 사본 - 수입거래계약서 - 수입물품 운송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증명서 사본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 사본 - 수출신고필증,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 원재료 생산 및 구입 관련 증빙서류 - 원가계산서, 원재료 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 출납, 재고관리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증명을 위해 작성 제공한 서류 - 수출자와 체결한 물품공급 계약서 -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 원재료 생산 및 구입 관련 증빙서류 - 원가계산서, 원재료내역서, 공정명세서 - 출납, 재고관리대장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최 지 아
jachoi@customsservice.co.kr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중국

1992년 사회주의체제에 자본주의체제를 포함시키며 사회주의시장경제를 표방한 중국, 시간이 지나면서 자본주의체제 중심에 사회주의체제를 일부 존속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의 평등사회와 다른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중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중국 하면 사회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 하면 떠오르는 것이 평등주의입니다. 의사건 노동자건 국가가 정한 만큼 받는 체제를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 중국에서는 차별화가 너무나 일반적이어서 중국을 평등 사회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엄청난 착각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대사관에 가보면 비자 신청시 긴급을 요할 경우의 수속비와 보통으로 할 경우의 수속비가 다릅니다. 이를 게시판에 공시하고 있는 대사관은 중화민국 대사관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일반택시의 기본요금이 지금은 주·야간으로 이원화되어 있지만 얼마 전 까지만 해도 120, 160, 200 위안으로 차의 크기, 성능에 따라 다릅니다. 버스도 3가지 종류가 있으며 냉온 방 시스템 유무 등 그 질의 정도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3, 4 구간 경과 시마다 1 위안씩을 추가 요금으로 받습니다.

기차역 대기실은 복잡하고 시끄럽기 짝이 없지만, 따로 휴게실이 있는데 5 위안 짜리 휴게실은 의자와 일반 소파만 있는데 반해 10 위안 짜리는 고급소파와 차도 서비스해 주 TV도 있습니다. 기차를 타게 되면 딱딱한 의자가 있는 열차 칸, 폭신한 의자가 있는 열차 칸, 침대 칸이 구분되어 있으며 그 서비스가 서로 다릅니다.

똑같은 영화를 개봉하더라도 시내중심가에 있는 극장과 변두리에 있는 극장 등 위치와 깨끗한 정도 등에 따라 극장 가격이 2 배 이상 차이 납니다. 아파트를 분양할 때 우리는 인테리어를 다 해서 분양하지만 중국에서는 인테리어를 하지 않고 분양합니다. 왜냐하면, 각자는 각자가 믿는 풍수가 있고 자기의 고유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립학교는 기부금 입학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입학시험 합격선이 97 점이면 96 점, 95 점, 94 점 맞은 학생에게만 기부금 입학 자격이 부여되고 점수 차에 따라 기부금액을 달리 합니다. 기숙사도 방의 크기와 깨끗함의 정도에 따라 하루에 2 달러, 4 달러, 6, 7 달러, 10 달러, 13 달러, 20 달러 가격이 차이 납니다.

단과대학에 따라 연봉이 서로 다르고 연구 수행 실적에 따른 성과급과 학장의 평가에 의한 수당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수의 연봉도 차등 지급됩니다. 타이거 우즈의 골프 열기가 중국에서도 보편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하는 캐디와 못하는 캐디가 받는 캐디 피가 다릅니다.

자기의 능력에 따라 차등대접을 받고, 경쟁을 통해서 더 높은 대우를 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장점입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앞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릴 때부터 일상생활을 통해 너무나 자본주의적인 사고 방식을 체질화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국 사람들의 참 모습입니다. 등소평의 위대함은 평등 이데올로기에 젖은 인민들을 미몽에서 깨우지 않고는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일찍 깨닫고 그것을 혁파해 왔다는 점에 있습니다.

미국 경제연구소(IE)의 중국전문가인 대니얼 로젠(Daniel Rosen)은 중국체제의 변화를 예견한 바 있는데 "처음에는 사회주의체제에 자본주의 체제를 포함시켰다. 그리고 자본주의 영역을 점차 넓혀 나갔다. 시간이 지나면 중국체제는 자본주의 체제를 중심으로 하면서 사회주의 체제를 일부 존속시키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미 중국은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중국투자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경제부총리를 지낸 바 있는 진념씨는 "중국은 빛의 속도로 변하는 나라다. 한국보다 더 자본주의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의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면 소름이 끼치도록 중국이 무섭습니다. 중국이 지난 1992년 공산당 대회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하며 본격적인 개방정책을 전개한 이후 중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의 수는 약 40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외국 투자기업이 중국에 동지를 튼 것은 중국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중국 이외의 시장에서도 생존할 수 없다는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중국은 이제 "안으로의 세계화"를 거의 마치고 "밖으로의 세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세계는 중국으로, 중국은 세계로" 향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전세계의 유수 기업이 중국에서 뛰고 있고 중국이 이렇게 무섭게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지, 100m 달리기를 하고 있는지, 마라톤을 하고 있는지 무척 궁금 해집니다.

한국전자금융

대표이사 박상태

(stpark2009@hanmail.net)

관세무역관련법령 변경 소식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특허보세 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개정이유

우리나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및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가 2012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 개정사항에 맞추어 양허관세규정이 적용되는 품목의 품목번호·품명 및 양허세율을 수정하려는 것임

개정내용

고무제의 공기타이어, 유아용 의류 등 6개 품목의 경우, 금년도 기본관세율 개정으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적용 기준이 되는 실행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일정 특허품 (실행관세율의 30% 또는 37.7%)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허세율을 하향조정

시행시기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개정이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2012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 적용 품목의 품목번호·품명 수정 및 적용대상을 현행 관세부과대상품목의 90%~95% 수준까지 확대
'07년(1.8%) → '08년(75%) → '09년(80%) → '10년(85%) → '11년(90%) → '12년(95%)

개정내용

①공여확대는 특혜관세가 적용되지 않았던 의류제품, 농수산물 중 민감성 낮은 품목 등을 대상으로 함

②2010년 UN이 '몰디브'를 최빈개도국에서 제외함에 따라 '몰디브'를 특혜관세 대상국가에서 제외

시행시기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

□ 「관세법 제 226 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주요개정

개정이유

2012 HSK 변경사항(세번 삭제·신설 등)을 세관장확인대상품목에 반영하고 관련 법령개정 등으로 세관장확인대상 품목 추가·삭제 등 조정 필요

개정내용

○ 2012 HSK 개정 등에 따라 이를 세관장확인대상 지정품목에 반영하여 수출지정품목은 HSK 119 개 삭제, 200 개 신설/수입지정품목은 HSK 699 개 삭제, 1,175 개 신설

○ 추가 및 삭제되는 품목 예시는 하기와 같음

· 마약류 원료물질 추가 지정에 따라 페닐아세트산 (HSK 2916.34-1000) 등 8 개 품목 추가

· 의약품 정책변화에 따라 약물오남용 방지를 위해 구제역 백신(HSK 3002.30-1000) 등 12 개 품목을 추가

· 환경보호 및 사회안전을 위해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중 고 위험병원체가 반입될 경우

분류되는 바이러스 및 항바이러스(HSK 3002.90-5000) 등 2 개 품목을 추가

·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중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확인하는 동물용 의약품과 의료기기 감초액기스(HSK 1302.12-0000) 등 221 개 품목을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에 포함

· 전기용품중 통관단계에서의 확인 필요성이 떨어진 환등기(HSK 9008.10-0000) 등 4 개 품목은 삭제하고, 안전인증이 검증되지 않은 중고 전기제품 등이 국내반입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고자 프린터(HSK 8443.31-1010) 등 72 개 품목 추가

· 전기통신기본법상 인증업무가 전파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된 영상전화기(HSK8517.69-2000) 등 22 개 품목을 전파법으로 개정

시행시기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

□ 2012년 1월 1일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 등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2012년 1월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현재 발효 중인 한·칠레 FTA 등 7 개 FTA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수정

2.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2012년 1월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이 적용되는 품목의 품목번호·품명 수정 및 특혜관세 적용대상을 현행 관세부과 대상품목의 90%에서 95% 수준까지 확대

3.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및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가 2012년 1월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이 적용되는 품목의 품목번호·품명 및



양허세율을 수정하려는 것임

4.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2012년 1월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국제협력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수정 하려는 것임

5. 품목분류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WCO HS 위원회 제 46 차부터 제 47 차까지의 'HS 해설서'와 'HS 품목분류의견서' 개정사항을 국내수용하기 위함

6. 관세법 제 226 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개정안 입안계획서

최근 개정된 2012 HSK 변경사항(세번 삭제·신설 등)을 세관장확인대상품목에 반영 및 관련법령 개정 등으로 세관장확인대상 품목 추가·삭제 등 조정 필요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이 선 경

sklee@customsservice.co.kr

US Customs Valuation Rulings ② 미국 관세청 예규(Rulings)로 알아보는 관세평가

EDITORIAL NO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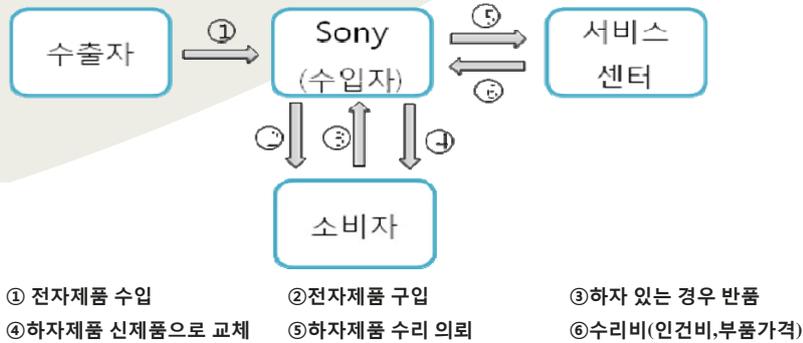
신한관세법인의 관세사들은 2 주에 한번씩 모여 미국 관세청의 예규(Rulings)를 스터디하고 있다. 미국 Rulings 는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도 자주 인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중요성과 연구의 실익이 크다.

지난해부터 다수의 사례를 연구 하였으나 그 중에서도 함께 공유할 만한 중요한 케이스를 선별하여 소식지에 게재해 나가고 있다. 이번 소식지는 Rulings 스터디의 조연자인 정정식 관세사께 조언을 받아 해당 Ruling 담당자의 글을 실는다.

과세가격 산정 시 Repair Cost 의 공제요소 해당여부

(HQ 544394 '90.10.09.)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법정가산요소를 가산하고 조정한 거래가격이다.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이란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을 말한다. 그러나 1) 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설치·조립비용, 2) 수입항 도착 후의 운송·보험료, 3) 우리나라에서 부과된 관세 등 세금, 4) 연불조건수입인 경우 연불이자(이상 4 가지)가 구매자의 실제지급가격과 명백히 구분되는 때에는 이를 실제지급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거래사실(Facts)

당해 사안은 미국의 수입자 『Sony Corporation of America』(이하 "S")가 수입한 특정 전자제품의 가격결정과 이에 대한 불복내용에 관한 것으로 거래사실은 다음과 같다.

- 1) 수입자 S 가 수입하는 특정물품은 텔레비전, 라디오,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 기타 전자제품 임
- 2) S 는 미국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물품의 품질에 대하여는 구매일로부터 90 일 또는 1 년의 기간 동안 하자를 보증 함.
- 3) warranty(하자보증)은 제품의 정상조건에서의 재료상, 제조공정상의잠재적 하자를 커버함.(The warranty covers latent defects in material and workmanship under normal conditions)
- 4) 잠재하자상품의 경우 소비자는 S 에게 반납하여, 새로운 물품을 받고 S 는 하자상품을 수리한 후 second quality merchandise 로써 할인된 가격으로 재판매함.
- 5) 또한 S 는 잠재적 하자 상품의 수리를 위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서비스센터와도 계약, 서비스 센터는 인건비와 부품가격을 포함한 수리비 총액을 수입자에게 청구 함.
- 6) S 는 발생된 수리비의 총액과 재판매된 제품의 손실을 보여주는 기록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러한 기록 자료의 사본은 일부 제출 됨.

□ 쟁점(Issue)

상기한 수리비용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

□ 쟁점검토(Law and Analysis)

1. 법적근거

수입물품에 대한 최우선의 과세가격결정 방법은 관세법(19 U.S.C.) §1401a 규정의 거래가격 방법이다. 동 규정은 거래가격에 대하여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 법정 가산 금액을 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대하여 "수입물품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총금액" 으로 규정하고 있다.(b)(4)

Generra 판결 (Slip - Op. 89 - 1652 (1990))에 따르면 법원은 수입자가 별도로 판매자에게 지급한 모든 금액은 수입물품과 관련된 금액으로 보아 모두 실제지급가격에 포함하도록 하는 세관의 입장은 합당하다고 판정한바 있다.

이와는 반대로 402(b)(3)(A)규정에 의하면 특정 요소는 거래가격에 포함되지 않음을 규정 하고 있으며, 402(b)(3)(A)(i)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의 금액이 구매자 실제금액과 명백히 구분되는 때에는 이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A) 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당해 수입 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2. 수입자의 주장

상기의 규정(402(b)(3)(A)(i))을 인용하여 수입자는 쟁점대상의 수리비용은 미국으로 수입된 이후 행하여진 수입물품의 유지(maintenance)를 위한 합리적인 가격 (warranty)과 연관된 금액으로 거래가격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C.S.D. 88-18 을 인용하여 "estimated" repair costs 로써 공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3. 미국 관세청의 입장.

TAA 의 402(b)(3)(A)(i)규정은 속성상 warranty /repair costs 를 언급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402(b)(3)(A)(i)규정에 의하여 warranty /repair costs 를 거래가격에서 공제할 권한이 있는냐의

쟁점에 대해 이러한 사안은 일반적으로 턴키계약(turn-key contracts)하에서 적용된다는 것이 세관의 입장이다.

이러한 해석은 "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산업플랜트, 기계, 장비와 같은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거래가격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charges for construction, erection, assembly, maintenance or technical assistance, undertaken after importation on imported goods such as industrial plant, machinery or equipment" should not be included in transaction value) 라고 한 GATT Valuation Agreement 규정이 이를 뒷받침한다.

상기한 규정은 잠재적 하자에 의한 수리(repairs for latent production defects)비를 거래 가격에서 조정하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402(b)(3)(A)(i)규정은 산업플랜트, 기계, 장비와 같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용된다는 것이 관세청의 입장이다.

결론적으로 거래가격에서 공제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한 402(b)(3)(A)(i)규정은 소비품에 대한 하자보증/수리비용을 공제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플랜트, 기계, 장비와 같은 수입물품의 수리비와 관련된 금액에 적용된다.

이에 덧붙여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수입물품의 교환에 상응하여 지급하는 하자보증을 고려한 금액을 포함한 모든 금액은 분명 실제지급 금액의 일부를 이루며, 이는 누구도 공제할 수 없다.

□ 결정(Holding)

쟁점 사안에서의 warranty cost 는 실제지급금액과 명백히 구분될 수 없거나와 402(b)(3)(A)(i)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도 않는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신 성 훈

(shshin@customsservice.co.kr)

(※예규 원문은 아래 링크 - 공지사항 참고)

<http://www.customsservice.co.kr>

WHERE IS GRACE CHANG?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내일



장승희 대표 관세사

최근 한 일간지에 '떨어지는 계층 상승 꿈'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내 아이가 나 보다 더 잘 살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하는 사람들 보다는 '잘 살 가능성이 없다'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아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내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내일이 어떠해야 잘 사는 것이고 행복한 것일까? 어떤 사회를 물려줘야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일까? 생각해 봅니다.

운동장 구석에 똑똑 물 떨어지는 수도꼭지를 잠그러 뛰어가는 착한 초등학생처럼 살아봅시다' 라고 누군가 글을 썼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내일이 내가 살아가는 오늘보다 더 좋은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내일이 올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걸까요? 수도꼭지를 잠가야 한다는 순수한 마음, 똑똑 물 떨어지는 것이 보이는 맑은 마음, 바른 일이라는 생각에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뛰어가는 적극적인 마음 등등이 합쳐질 때에 오늘보다 밝은 내일이 오지 않을까요?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소식지이기에 **신한인이 선정한 10 Best Issues** 를 Cover Story 로 하였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나 살펴보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FTA News 는 원산지검증 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Voices From The Fields 는 전 관세청 차장이시고, 현 한국전자금융 사장이신 **박상태 사장**께서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중국'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관세무역관련 법령변경소식에서는 2012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되는 고시들에 대하여도 알려드립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관세청 예규를 알아보는 관세평가는 '과세가격 산정 시 Repair Cost 의 공제요소 해당여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읽어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속에 물들어 가면서 보이지 않는 구석 한 칸으로 밀쳐 버렸던 마음들을 다시 꺼내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순수한 마음, 배려하는 마음, 작은 것이라도 옳은 것이면 실행하는 마음 등을 다시 찾아내어야 하겠습니다. 한 해가 가고 다시 새해가 시작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를 마무리 하며 새해의 각오와 결심을 다지는 이 시점에 '운동장 구석에 똑똑 물 떨어지는 수도꼭지를 잠그러 뛰어가는 초등학생 아이처럼 살아가기' 또한 그 리스트에 포함을 시켜야 하겠습니다.

가는 해보다 더 좋은 새 해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을 우리의 아이들에게 물려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해 보내주신 후의에 감사드리며 새해에 하시는 모든 일에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ZOOM-IN TRADE 를 소개하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좋은 정보를 친구와 나누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Zoom-in Trade"를 친구들에게 소개하세요. 이메일(shinhan@customsservice.co.kr)이나 전화(02-542-1181)로 동료분의 이메일을 남기시면 줌-인트레이드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센스 있는 친구가 되는 법!! 참 쉽죠?



ABOUT WRITERS

FTA News- 원산지검증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



최 지 아 관세사 (jhlee@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FTA T/F Team
-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연
- FTA 통관 실무 및 비즈니스 모델

Voices From The Fields- 소름끼치도록 무서운 중국



박 상 태 사장 (stpark2009@hanmail.net)

PROFILE

- 現) 한국전자금융 대표이사 사장
- 前) 재정경제원 대외경제총괄과장
- 前) 관세청 차장(1 급)

관세 법령 변경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규칙등



이 선 경 관세사 (jsklee@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FTA T/F Team

US Rulings 연재@ 과세가격 산정시 Repair Cost 의 공제요소 여부



신 성 훈 관세사 (shshin@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AEO Team 팀장
- 한국관세사회 AEO 인증 가이드북 발간 참여
- 웅진패스원 강사 관세평가



통권 40 호 | 발행일 2011 년 12 월 15 일 | 발행인 장승희 | 편집인 김연서
발행처 신한관세법인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06-4
Tel 02-542-1181 Fax 02-544-9705 간별 월간